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창작영역

시각예술

사업명	접수일정	문의처	페이지
시각예술 창작산실	2023.10.4.(수)~10.26.(목) 18:00 마감	061-900-2345	49
시각예술 창작주체		061-900-2347	56

시각예술 창작산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 단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자유로이 기획하실 수 있도록, 창작 형태를 제한하던 기존 사업 틀을 개선하였습니다.

사업유형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을 희망하는 모든 예술주체(작가, 기획자, 비평가, 공간, 매체 등)가 <시각예술 창작산실>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1억원 이내 범위에서 전시, 출판, 행사, 기타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세세하게 분류된 지원 사업 틀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 본 사업은 단기간(1년)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각종 창작활동과 프로젝트를 다년간(3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공간 포함)는 <창작주체> 지원 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상세)

구분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사업명	시각예술창작산실_우수전시 시각예술창작산실_비평 시각예술창작산실_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 시각예술창작산실_공간	유형 통합																		
신청주체	사업 유형별로 주체 구분	유형에 따른 주체 구분 없음 * 단, 전시의 경우 '기획자'로서 본인 명의의 전시를 기획한 실적이 있어야 함																		
프로젝트 형태	사업 유형별로 제한	제약 없음 * 상세 예시는 '지원내용' 항목 참조																		
지원액 규모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지원규모 선택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지원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우수전시</td> <td>5천만원/1억원 정액지원</td> </tr> <tr> <td>비평지원</td> <td>5백만원~1천5백만원</td> </tr> <tr> <td>중견작가프로모션</td> <td>3천만원 정액지원</td> </tr> <tr> <td>공간지원</td> <td>2천만원~5천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규모	우수전시	5천만원/1억원 정액지원	비평지원	5백만원~1천5백만원	중견작가프로모션	3천만원 정액지원	공간지원	2천만원~5천만원	프로젝트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규모 선택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지원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유형① 소규모</td> <td>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td> </tr> <tr> <td>유형② 중규모</td> <td>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td> </tr> <tr> <td>유형③ 대규모</td> <td>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규모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구분	지원규모																			
우수전시	5천만원/1억원 정액지원																			
비평지원	5백만원~1천5백만원																			
중견작가프로모션	3천만원 정액지원																			
공간지원	2천만원~5천만원																			
구분	지원규모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 사업목적

-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전시, 출판, 행사 등) 구현을 지원하여 예술 작품 창작 활성화 및 예술 향유 기반 마련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2024년 전시, 출판, 행사 등 시각예술분야 다양한 창작, 매개, 향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예술가, 단체 및 공간에 대해 프로젝트 수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수행 후 프로젝트 결과물은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발표

- **신청대상** : 전시, 출판, 행사 등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실행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개인 및 단체 : 작가, 기획자, 비평가, 매체 등
 - 공간 : 사립미술관, 민간전시전문공간(상업공간 제외) 및 레지던시, 예술창작촌, 개방형수장고 등 특성화 공간 운영자(공공 소유 공간일 경우 민간위탁운영자)
- **자격기준**
 - 개인 및 단체 : 시각예술분야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있는 개인 및 예술단체
 - 공간 : 2023년 9월 25일 현재까지 1년 이상 해당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자 혹은 민간위탁운영자(지자체 등 공공 소유 공간의 경우)
 - ※ 전시 프로젝트는 '기획자'로서 본인 명의의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및 단체, 공간만 신청 가능
 - ※ 행정인력 참여 및 신청자-행정인력 간 협약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 '22~'23년 <시각예술창작산실_중견작가프로모션기획>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 휴식년제를 적용하며 '24년도 창작산실_시각예술 사업은 신청 불가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개인 및 단체 프로젝트
- 공간 프로젝트(전시전문공간/ 특성화공간 구분)
- 프로젝트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신청가능 프로젝트 유형(예시)〉 ※ 복수 구성 가능

- 전시 (예시: 개인전, 주제 기획전, 대중개방 야외 전시 등)
- 출판 (□단행본/ □간행물) (예시: 작가 프로필 도록, 비평가 앤솔로지, 온/오프라인 간행물 등)
- 행사 (예시: 비평 심포지움, 야외 퍼포먼스, 관객 참여 프로젝트 등)
- 특성화 공간 운영 프로젝트(예시: 레지던시, 예술창작촌, 개방형수장고 등)
- 기타 (예시: 사회적 의제를 다룬 공공예술 사업, 다양한 주체간(작가, 기획자, 전시공간, 레지던시 등) 창작 교류 프로그램, 한국작가 프로모션 기획, 비평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큐레이터 연합 공동 워크숍 등)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 ①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 ②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③ 국외에서 개최 예정인 전시, 행사 등 프로젝트
- ④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 ⑤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2024년 총 지원예산 : 2,748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개인/단체	공간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6건 내외	45건 내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8건 내외	8건 내외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4건 내외	7건 내외	

※ 백만원 단위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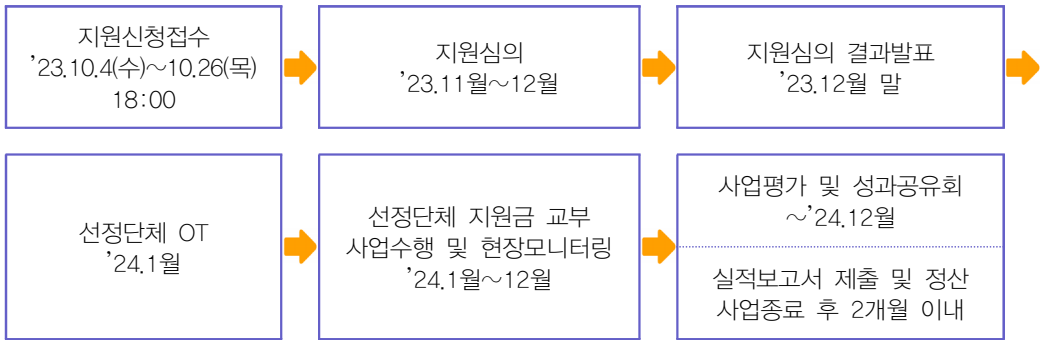
※ 지원규모 및 선정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민간위탁운영 공공 공간(지자체 소유 등)의 경우, 지방비, 공공기관 예산 매칭 권장

○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및 정산 필수(자부담 포함)
- 프로젝트 실행 후 성과공유회 추진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구분	지원 규모	심의방법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서류심의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차 서류 심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동	공간
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의 역량 (40%)	<p>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의 유관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을 보았을 때,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예술활동 이력 및 활동 결과 내용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운영 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 (30%)	<p>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분명하며 활동 계획은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일정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사업 예산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인력확보와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및 관람객 개발 계획 등이 수립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운영 목표(비전)가 분명하고, 향후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에 부합하며 지원 대상에 적합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한 프로젝트가 공간성격에 적합한가?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이인가?
사업의 수월성, 책임성 및 기대효과 (30%)	<p>신청한 프로젝트가 주제적 시의성, 명확성, 창작작품의 수월성 및 공공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예술적 파급력과 기대효과가 탁월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프로젝트 주제가 시의성이 있으며 명확한가? (작품) 우수한 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 또는 제작하는가? (책임성) 사업추진 상 안전성,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아티스트피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였는가? (파급력과 기대효과) 사업을 통한 최종 성과가 예술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 최근 2년간 (2022~2023년도) 창작의과정#시각예술 사업 선정자는 해당 주제로 '24년도 <창작산실_시각예술>을 통해 전시 실현 내용으로 지원신청 시, 1차 서류 심의 면제 (단, 2차 심의가 없는 '유형① 소규모(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서류심의 진행)

※ 기존 <창작산실_공간지원> 사업 수행 단체의 경우 심의 시 사업 평가결과 25% 반영

구분		심의 반영 비율
2023년 공간지원사업 수행 공간	'23년도 단년도 선정	'23년도 평가결과(25%) + '24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2~'23년도 다년도 선정	'22~'23년도 연도별 평가결과 평균(25%) + '24년도 사업계획 심의(75%)
'24년도 신규 신청 공간		'24년도 사업계획 심의(100%)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분야 선택 시 “시각예술”로 신청

– 제출자료 : (필수) 202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1부

※ 신청주체가 ‘공간’인 경우 최종 선정 후 공간 운영 주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술관 등록증(해당자), 공간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일용임금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문의처

○ 시각예술부 : 061-900-2345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단, '23년도에 '23-'24 연속 지원으로 선정된 공간의 경우, '24년도 창작산실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하며, '24년도 창작주체 사업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각예술 창작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각 분야 예술의 장 안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살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단년간 프로젝트(사업)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년도 프로젝트 지원은 해당연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점, 세분화된 지원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활동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 긴 호흡과 자율성이 필요한 예술 현장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프로젝트 지원 구조에 따른 세세한 지원대상별 지원금 사용 항목, 회계연도 내 작업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사업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창작주체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과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가, 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 그 자체를 주목하겠습니다.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각 분야의 예술 생태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시각예술분야 예술현장의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
- 예술생태계 내 시각예술분야 활동의 다양성 확보 및 새로운 영역의 개척

2. 사업내용

주요 내용

- 시각예술분야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창작주체 발굴 및 육성,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3개년 지원)
 - * (핵심 창작주체) 역량이 입증된 자로 선정하기 위해 1회 이상 공공기관 지원금 수혜 이력 보유 필수, 지원금 활동 이력 및 성과가 주요 심의기준임
- 창작주체는 향후 3년(2024~2026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 제시하고, 예술위원회는 각 창작주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비용의 실비 일부 지원

○ 신청대상 : 시각예술분야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창작자, 기획자, 공간, 매체, 플랫폼 등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영향력이 높은 개인 또는 단체(공간 포함)로 기존 프로젝트 지원 사업 수행 결과를 통해 역량이 입증된 자

○ 자격기준 :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시각예술분야 사업수행(혹은 공간운영) 이력이 5년 이상인 개인, 단체 및 공간

※ 대표 실적보고서 1건 제출 의무

※ 행정인력 참여 및 신청자-행정인력 간 협약 필수(지원신청서 양식 참조)

○ 지원신청 부적격자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 활동 주목적이 상업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단체 및 공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등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미술관

※ 기업 지원 미술관 구분 기준 및 지원제외 대상

- ① 기업이 미술관을 운영·관리하거나 아래 ②~⑤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 ② 미술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처리를 해당기업에서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인력과 임금을 지원받는 경우
- ③ 미술관의 경리처리, 회계장부, 재무제표가 부설기관 등 해당기업과 종속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경우
- ④ 미술관 건축물과 토지, 시설, 소장품, 자산 등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
- ⑤ 미술관의 소장유물과 자료가 설립 기업의 생산품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홍보나 영리가 우선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 지원가능 대상

- ① 설립자가 기업의 대표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가 서로 다른 법인이나 기구로 독립되어 개인적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 ②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모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③ 설립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 ④ 설립주체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단체

○ 지원내용

- 2024~2026년 3개년 간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목표의 달성 활동 실비 일부 지원

※ 단, 매년 말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항목	창작 준비활동, 프로젝트 제작 및 결과물 향유·확산, 국제교류 활동, 공간운영, 공공예술 활동 등			
상세 지원항목 (※ 예시)	[3개년 창작 활동 및 프로젝트]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창작 활동	□ 조사연구활동(자문/자료 수집·정리)		
			□ 레지던시 □리서치 트립	
		□ 작품 제작·변형·보존·수복		
		□ 아카이빙 및 포트폴리오 제작		
	단기 프로젝트	□ 전시	□ 전시	□ 출판
		□ 행사(아카데미 운영 등)	□ 출판	□ 행사(캠페인, 퍼포먼스 등)
		□ 행사(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중기 프로젝트	준비	발표	유통·확산
□ 레지던시/리서치 트립		□ 전시	□ 해외 유력 매개자 (큐레이터, 이론가) 협력 프로모션 기획 (스튜디오 방문, 전시, 출판 등)	
□ 원고 수집 및 아카이빙		□ 출판		
□ 워크숍		□ 행사		
	□ 작품 제작·변형			
단체 및 공간 운영	□ 인력 운영 □ 전시 공간 운영 □ 작가 스튜디오 운영			
※ 복수의 중·단기 프로젝트를 원하는 연도에 다양하게 배치하여 수행 가능				

○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업

- ① 상업적 목적이 강한 전시 및 행사
- ② 공모전, 수상전 등 기획 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협회전, 연례전, 학위청구전
- ③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예정인 전시
- ④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및 연례 학술 행사

○ 2024년 총 지원예산 : 785백만원

(기존 '23~'24년도 연속 수행 선정 공간 지원액 185백만원+'24년도 신규 선정 예산 600백만원)

○ 지원규모

구분	지원규모	선정규모		자부담
		개인/단체	공간	
유형① 소규모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건 내외	5건 내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유형② 중규모	3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건 내외	3건 내외	
유형③ 대규모	7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	1건 내외	2건 내외	

※ 백만원 단위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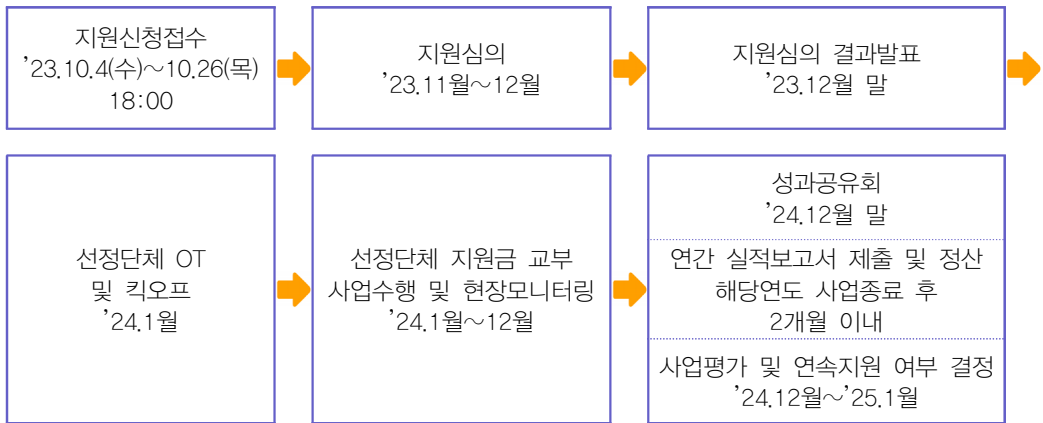
※ 지원규모 및 선정건수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 연간 평가 결과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금액은 향후 3년간('24~'26년) 매년 동일 금액으로 지원
- ※ 3년의 지원사업 수행('24~'26년) 이후 연속 선정 시에는 자부담 비율 증대 예정

○ 사업추진체계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필수(자부담 포함)
- 연간 킥오프·성과공유회 추진
 - *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야별 창작주체의 활동 내용을 예술 현장에 공유 예정
- 현장 모니터링 점검 및 보조사업 수행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 평가 추진, 결과는 차년도 연속지원 여부 결정에 반영 예정

○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3. 지원심의 및 신청 방법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 2차 심층 인터뷰 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통	공간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예술활동 활동 이력(경력) • 신청자의 대표적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내용 • 신청자의 경력, 실적 및 과거 성과들은 해당 예술 현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운영 목표(비전)와 기존 운영실적은 지원대상 공간에 부합하는가? (자체 기획 위주의 창작활동을 통한 새로운 담론 창출, 향유·유통 영역에 대한 대안 모색, 예술가와 이용자의 다양한 교류, 지속가능 운영을 위한 활동 등) • 사업주체의 실적을 볼 때,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공통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 및 목표가 있는가?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와 활동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예술 종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가? 신청자가 제시한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신청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은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한 자원마련계획은 명확하며 구체적인가? (외부지원금,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현장의 파급력, 책임성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급력) 신청자의 활동 이력과 3년간 활동 목표를 고려할 때, 향후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책임성) 사업추진 상 안전성, 구성원과 참여자 권익보호 장치(아티스트피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교육 참여, 연구/워크숍 진행 등) 등 공공지원사업의 책임성 확보 여부 (기대효과) 신청자의 3년 간 목표와 활동 내용은 신청자의 중장기적 성장 및 활동 기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운영인력 및 참여자, 관람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검사 수검, 위급 상황 대처매뉴얼, 보험 가입 등) 책임있는 공간 운영을 통해 공공성, 개방성 확장이 기대되는가? (운영 공간의 공공성, 개방성, 관람객을 위한 편의성 등)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제출자료(전 자료(①~③) 필수 제출)

① (필수) 2024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hwp) 1부

② (필수) 공공기관의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수행 대표 실적보고서 1부

※ 여러 개의 실적이 있다 할지라도 실적보고서는 반드시 대표 실적 1부만 제출

③ (필수) 최근 5개년 이상 신청자의 활동 이력(공간일 경우, 공간운영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1부 (자유양식, 10page 이내)

※ 동영상은 활동 이력 소개 및 증빙자료 내 링크로 제출

※ 신청주체가 ‘공간’인 경우 최종 선정 후 공간 운영 주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술관 등록증(해당자) 공간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공간위탁운영협약서(해당자) 등)

4.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항목

비목	세목	항목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참여인력 사례비 (기획자, 예술가, 연구진, 비평 등) 홍보 및 제작비, 인쇄비 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 예술인고용보험료 영유아돌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각종 보험료 (작품, 행사, 상해 등)
		임차료	차량·시설·장비 임차료, 장소 대관료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국외여비	교통비, 항공료, 숙박료 등 실비 증빙 가능 항목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간담회비	

- ※ 단체 및 공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월세))는 지원신청액의 50% 이상 편성 불가
- ※ 항목별 편성 단가 기준은 지원신청 공통안내 / 지원금 예산 편성 안내(24p) 참고

5. 문의처

- 시각예술부 : 061-900-2347
- ※ 문의 시간 안내 : 평일 10:00~17:00(점심시간 제외)

지원신청 유의사항

- 창작프로젝트 지원(창작의과정,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은 동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복 선정 시 택일 해야 합니다.
(* 단, '23년도에 '23-'24 연속 지원으로 선정된 공간의 경우, '24년도 창작산실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하며, '24년도 창작주체 사업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고,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의 중복 선정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